

## 2005년 환경예산, 생활환경개선에 집중투자

환경부는 2005년 중앙정부 환경예산이 3조 5,1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3.7%보다 3.4배나 높은 규모라고 밝혔다.

소관별로는 환경부 2조 8,557억원, 건설교통부 4,511억원(광역상수도사업), 행정자치부 903억 원(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해양수산부 655억원(해양오염방지사업), 소방방재청 481억원(오염 소하천정비사업)이다.

200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 낙후지역인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시설 설치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개선사업 투자 예산을 대폭 증액 하였다.

•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개조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사업에 금년 보다 818%가 증가한 1,300억원을 투자한다.

※ 수도권대기개선대책 세부내역 : 전기하이브리드(200대), 저공해자동차(650대), 전기이륜차(3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DOC 15,799대, DPF 18,127대), 경유자동차개조(4,518대), 노후화물차 조기폐차(6,725대), 총량규제 사업장 방지시설설치(23개소) 등

• 농어촌, 도서지역의 상수도 설치 및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등 낙후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보급하기 위한 상수도 예산을 대폭 증액(1,177억원→1,507억원)하고,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에도 166억원을 지원한다.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85개소(계속 55, 신규 30), 지자체보조 80%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 35개소(계속 25, 신규 10), 지자체보조 70%

※ 중소도시지방상수도설치사업 : 4개소(계속 4), 지자체융자 50~70%

둘째,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크게 증액(3억→68억원) 투자한다.

• 최근 실내 공기 오염으로 제기된 새집증후군 및 화학물질과민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45억 원을 신규 지원하여 종합 연구동 신축 등 실내 공기질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 특히 폐광과 산업단지 인근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3억 원→23억원)하였다.

셋째, 생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와 자연친화

적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분야에도 대폭 증액 투자한다.

• 국가생물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립생물자원관을 2006년까지 준공하기 위해 3차년도 공사비 150억원을 투입하고 동강 등 생태우수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사업에도 153억원(61%증)을 투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 사업기간('02~'06), 총사업비(581억원), 규모(건축연면적 8,310평, 수장동, 전시동, 보존온실·사육실, 연구실 등)

※동강지역 생태계 보전관리대책 : '05년 84억원(토지매입 0.92㎢, 80억, 감시원 인건비 등 4억), 토지매입계획(총사업비 398억원, 기간 '03~'07, 규모 8.1㎢)

•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탐방로 정비, 훼손지 복구사업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736억원(10.5%증)을 투자하고 자연체험시설·자생식물원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설치에 142억원(31.5%증)을 지원한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35개소(계속 30, 신규 5), 보조율(30~50%)

넷째, 수질, 폐기물 등 오염원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조 7,502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전국의 주요 하천 수질을 1~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7,695억원을 투자하여 657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5,781억원을 투자한다.

※하수처리장설치 : 보조사업(일반하수처리장 172개소, 시설개량 53개소, 마을하수도 169개소, 하수슬러지 8개소, 면단위하수처리장 47개소, 댐상류지역하수도시설 197개소, 보조율 10~80%), 공단하수처리장(1개소, 보조율 100%) 융자사업(연안지역하수처리장 10개소, 융자율 50~70%)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폐수의 처리를 위해 1,339억원을 지원하여 27개소의 공단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해 239억원을 지원한다.

※공단폐수처리시설 : 공단폐수종말처리장(18개소, 보조율 100%, 단 수도권은 50%),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9개소, 보조율 50%~100%)

•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해 1,082억원을 투자하여 135개소의 매립, 소각, 음식물류폐기물 등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 315억원을 지원하여 48개소의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쓰레기처리시설 : 쓰레기매립시설(18개소, 보조율 30%), 쓰레기소각시설(38개소, 보조율 30~50%),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38개소, 보조율 30%), 비위생매립지정비(30개소, 보조율 50%),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11개소, 15억원/개소)

다섯째,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환경기술혁신과 환경산업을 미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

## |||| 환경정책뉴스

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A 등급)로 평가된 차세대환경핵심기술개발에 882억원을 투자하고, 지역 특성별 환경기술 연구를 위해 16개 지역환경기술센터에 64억을 지원하는 등 2010년까지 세계 5대 환경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환경 R&D에 1,348억원(6.6%증)을 투자한다.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기간(‘01 ~ ‘10), 총사업비(1조원), ‘05사업내용(실용화·공공·

미래원천기술과제 223개, 실증화사업과제 27개, 사업단 4개 등)

\* 지역환경기술센터지원 : ‘02까지 16개소 지정, 센터당 평균 4억원 지원

• 환경산업을 미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하기 위해 북경산업센터 기능강화(4억), 협력단 파견(4억) 및 국제환경 협력사업(16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03년 수출실적 : 117개 업체에서 27개국에 5,819억원(‘02년 1,801억원보다 45%증) <표참조>

## 의 고

**본 연합회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본 연합회는 법인세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 공고 제2004-137호(2004. 12. 17)에 의거 공고되었다.

본 연합회는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연합회 회관건립기금이나 기타기금 마련에 활력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기부금은 년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시 손비처리 되므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05년도 환경부소관 부문별 예산

(백 만 원, %)

구 분	2004 예산	2005 예산	증(△)감	%	주요사업
계	2,679,678 (100)	2,855,723 (100)	176,145	6.6	
• 상수도관리	194,891 (7.3)	203,373 (7.1)	8,482	4.4	- 도서지역식수원개발(498억) - 농어촌생활용수개발(969억) - 중소도시지방상수도(213억) - 노후수도관개량(181억) - 간이상수도시설개량(40억)
• 수질보전 및 하수도관리	1,601,646 (59.8)	1,631,136 (57.1)	29,490	1.8	- 하수처리장설치(7,087억) - 하수관거정비(5,781억) -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649억) - 공단폐수처리시설(1,271억) - 자연형하천정화사업(518억) - 축산·분뇨처리시설(527억)
• 폐기물관리	282,635 (10.5)	278,687 (9.8)	△3,948	△1.4	- 쓰레기처리시설(1,077억) - 재활용시설 설치(144억) - 재활용산업육성용자(700억) - 환경자원공사출연(453억) - 공공재활용기반시설(171억)
•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	201,594 (7.5)	224,304 (7.9)	22,710	11.3	- 차세대환경핵심기술개발(882억) - 환경개선자금지원(600억) - 지역환경기술센타지원(64억) - 국제협력강화(57억) - 국립환경연구원(162억)
• 자연보전	108,662 (4.1)	126,249 (4.4)	17,587	16.2	- 국립생물자원관(150억) - 자연환경보전시설(142억) - 동강유역보전관리대책(84억) - 국립공원사업(610억) - 생태우수지역안내원운영(53억)
• 대기보전	99,425 (3.7)	193,313 (6.8)	93,888	94.4	- 수도권대기개선대책(1,300억) - 천연가스자동차보급(577억)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56억) - 실내공기질관리(45억) - 자동차검사장비확충(94억)
• 환경관리기타	190,825 (7.1)	198,661 (6.9)	7,836	4.1	- 세입징수비용교부(828억) - 인건비, 기본경비 등

S  
W  
E  
N

## 3대강 수계, 폐수배출허용기준 강화

'07년부터 "가"·"나" 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청정"지역기준으로 강화

3대강 수계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부하량 감소로 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 기대

환경부는 그 동안 한강에 비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하여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에 의한 수질개선과 안정적인 상수원수 공급을 위하여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을 1월 6일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3대강 수계권역 내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이 '07년부터 "가"·"나" 지역 기준에서 "청정"지역 기준으로 강화된다.

이번 "청정"지역 확대조치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수계별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3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9-2000)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고시개정으로 3대강 유역의 청정지역 면적은 22,026km<sup>2</sup> (56.7%)에서 '07년에는 25,553km<sup>2</sup> (65.8%)으로, '09년에는 28,665km<sup>2</sup> (73.8%)으로 증가하게 된다.

\* 한강수계는 '03년부터 임진강 문산취수장 상류 전역 및 잠실 수중보 상류 전역에 대하여 "청정"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한강수계는 유역면적 26,018km<sup>2</sup> 중 86.6%인 22,530km<sup>2</sup>가 청정지역임)

각 수계별 세부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계획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 낙동강 수계의 경우 본류 및 1차 지류에 대해서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확대하여, 지역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 배수구역은 '07.1월부터 적용

-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차지류 배수구역은 '09.1월부터 적용

● 낙동강 본류·1차지류 이외의 낙동강 수계 전역은 현행 유지하되, 추후 수질개선 정도를 검토한 후 필요시 강화 예정

● 금강수계는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수계 전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07.1월부터 확대·조정된다.

● 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섬진강 수계 전 지역과 영산강 수계 중 본류 I 구간 및 지석천·황룡강 유역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으로 확대된다.

● 낙동강 등 3대강 수계 공통으로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나" 지역인 경우에는 '07년부터 "가" 지역을 적용하고, '09년부터는 "청정" 지역으로 강화된다.

● 한편, 3대강 수계에서 새로이 “청정”지역으로 강화되는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07.1월부터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예정구역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구역내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정”지역의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오염총량제를 도입·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하여는 오

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해 종전의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아울러 청정지역 내에 위치한 배출업체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소요되는 시설개선 비용에 대하여는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재정융자 특별회계,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3.59% 변동금리) 할 계획이며, 시설개선 자금의 일부를 각 수계별 물이용부담금에서 무상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표참조〉

##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

구 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조치	비 고
하수종말처리 구역 또는 하수 처리예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지시설 중복투자예방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항목에 한하여는 “나” 지역 기준 적용</li> <li>고시 일부터 ‘06.12월까지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에서 ’09.12월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역을 적용</li> </ul>	
산업단지폐수 종말처리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지시설의 중복 투자예방을 위하여 종말처리구역내 배출업소에 대하여 “청정”지역 기준 적용 제외</li> <li>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례” 지역기준을 적용함으로 청정지역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li> </ul>	
오염총량제 시행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복 규제에 따른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시행하는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복규제 방지</li> </ul>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화학적산소요구량 · 부유물질량

지역구분	항목	1일 폐수배출량 2,000m <sup>3</sup>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m <sup>3</sup>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환경기준(수질) I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지역	환경기준(수질) II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지역	환경기준(수질) III, IV, 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 계획

(단위 : km<sup>2</sup>)

구분	계	변경 전			적용 시점	변경 후		
		청정	가	나		청정	가	나
계	38,818.0	22,026.0 (56.7%)	15,188.8	1,602.8	'07년도	25,553.2 (65.8%)	12,323.5	941.3
					'09년도	28,665.3 (73.8%)	9,426.6	726.1
낙동강	23,717.0	12,398.0 (52.3%)	10,452.0	867.0	'07년도	14,542.0 (61.3%)	8,439.7	735.3
					'09년도	17,601.9 (74.2%)	5,595.0	520.1
금강	6,695.0	4,562.0 (68.1%)	1,927.0	206.0	'07년도	4,192.0 (62.6%)	2,297.0	206.0
영산강 · 섬진강	8,406.0	5,066.4 (60.3%)	2,809.8	529.9	'07년도	6,819.2 (81.1%)	1,586.8	-
					'09년도	6,871.4 (81.7%)	1,534.6	-
(섬진강)	4,948.0	4,262.4	685.6	-	'07년도	4,948.0	-	-
					'09년도	4,948.0	-	-
(영산강)	3,458.0	804.0	2,124.2	529.8	'07년도	1,871.2	1,586.8	-
					'09년도	1,923.4	1,534.6	-

※ 금강수계의 경우 대청호 주변지역 중 대청호에 유입되지 않는 485km<sup>2</sup>를 “청정”지역에서 제외하고, 대청호에 유입되는 115km<sup>2</sup>를 “청정”지역으로 확대·조정

## 수계별 “청정” 지역 적용지역 및 시행시기

수계별	적용지역 범위	시행시기
낙동강	낙동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본류 배수구역	’07.1월부터 적용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1차지류 배수구역	’09.1월부터 적용
	본류·1차지류 이외의 낙동강 수계 전역	현행유지 (‘08.12월, 확대여부 검토후 결정)
	신규 배출시설	’07.1월부터 적용
금강	대청호로 유입되는 금강 상류 수계 전역	기존시설: ’07.1월부터 신규시설: ’07.1월부터
영산강 섬진강	섬진강수계 전역, 영산강수계중 본류 I 구간 및 지석천·황룡강유역	상동

\* 한강수계의 경우 '99년에 고시를 개정하여 임진강 문산취수장 상류 전역 및 잠실수중보 상류 전역에 대해 '03년부터 “청정지역” 기준을 적용(한강유역 면적 26,018㎢중 86.6%인 22,530㎢가 청정지역 임) ↗